



## Hearing Division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

1) 이의신청서는 기한까지 Hearings Division 에 도착할 예정입니까?

예  아니요

*이의신청서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후 도착할 경우 거절되며, 시기 적절하게 연장 신청을 하거나 공청회 기록 사본을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정문이 우편으로 발송될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35일입니다. 결정일은 공청회 결정문 표지에 있습니다. 답변자는 아래의 2단계와 3단계도 완료해야 합니다. 집행 기관은 아래의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답변자만 해당 - 아래의 납부 증명서와 송달 증명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벌금을 납부했습니까? (아래 선택 사항 중에서 **반드시** 하나에 예로 체크 표시해야 합니다)

- 벌금을 완납했거나 집행 기관이 벌금 전액을 면제했습니다.

예  아니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벌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차량 및 택시의 경우: 소환장/통지서가 TLC가 집행하는 법률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것일 경우 납부 또는 면제가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벌금 전액이 면제되었다고 해도 공청회 담당자의 결정이 배상 지급에 대한 명령이라면 답변자는 배상금을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 예치해야 합니다.*

- 답변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벌금 납부 면제를 요청합니다.

예  아니요

*답변자의 연방 세금 환급 서류의 처음 두 페이지 사본과 같은 경제적 곤란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첨부하고 벌금 납부가 답변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곤란을 유발할지 설명해야 합니다.*

---



---

3a) 본인은 이의신청서 사본을 (이의신청서 사본의 수령 기관 옆의 상자를 체크 표시하십시오)에게 발송합니다.

**건물의 경우:**  
Dept. of Buildings  
Administrative Enforcement Unit  
280 Broadway, 5<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7

**위생, 재활용, 파견 및 방지 차량의 경우**  
Department of Sanitation  
Bureau of Legal Affairs  
125 Worth Street, 7<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13

**소방 법규의 경우(불꽃놀이 포함):**  
FDNY Legal Enforcement Unit  
Bureau of Legal Affairs  
9 Metrotech Center, 4<sup>th</sup> Floor  
Brooklyn, NY 11201

**보건 법규, 레스토랑, 식품 판매업체, & SRO의 경우**  
DOHMH General Counsel  
42-09 28th Street, 14<sup>th</sup> Floor CN-30  
Long Island City, NY 11101-4132

**공기, 소음, 수도, RTK, HazMat & 하수도의 경우:**  
DEP General Counsel  
59-17 Junction Blvd, 19<sup>th</sup> Floor  
Flushing, NY 11373-5108

**교통법규 및 신문 선반의 경우:**  
Dept. of Transportation  
c/o Asst. Commissioner, HIQA  
55 Water Street, 7<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41

**공원관리국, Hudson강 공원 및 Battery Park City의 경우:**  
Parks Dept. Counsel's Office  
The Arsenal, 830 5<sup>th</sup> Avenue  
New York, NY 10065

**공중전화의 경우:**  
DOITT Customer Service Coordinator  
Public Pay Telephones  
75 Park Place, 9th Fl.  
New York, NY 10007

**시장의 경우:**  
Business Integrity Comm., Gen. Counsel  
100 Church Street, 20<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7

**소비자 및 일반 판매자의 경우:**  
Dept. of Consumer Affairs, General Counsel  
42 Broadway, 8<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4

**랜드마크의 경우:**  
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  
Municipal Bldg., 1 Centre St., 9th Fl., North.  
New York, NY 10005

**택시 및 임대 차량의 경우:**  
NYC Taxi & Limousine Commission  
Falchi Bldg., 31-00 4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작성한 신청서 사본과 첨부 서류를 소환장/통지서를 담당하는 집행 기관에게 보내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거절됩니다. 참고: 답변자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면제를 신청할 경우, 소환장/통지서를 담당하는 집행 기관에게 경제적 곤란에 대한 증명서 사본을 보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3b) 3a 단계에서 소환장/통지서를 담당하는 집행 기관 옆의 상자를 체크 표시하고 아래의 진술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 이의신청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본인의 이름 기입] \_\_\_\_\_은(는) [본인 주소] \_\_\_\_\_에 거주하며 위증시 처벌 받는 조건 하에 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아는 한 이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사실이며 [날짜] \_\_\_\_\_에 본 이의신청서 사본을 소환장/통지서를 미국 우편물 서비스의 우편함이나 기타 우편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담당하는 집행 기관에게 위 주소로 발송했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_\_\_\_\_

### 집행 기관만 해당

4) 집행 기관은 답변자에 대한 서비스가 명시된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